

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과제 제재처분 - 사업비 환수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:

서울행정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



## 1.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

(1) 산학협력단 - 사업비 환수 (환수처분) + (2) 연구책임자 교수 - 학술지원 대상자 선

정 제외 5년 (참여제한 처분)

## 2.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

## 2) 재량권의 일탈·남용 여부

가) 앞서 본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, 제20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가목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사업비 환수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하는 데에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나, 위 재량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제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(다만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을 정하는 데에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).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·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·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.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,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·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0. 4. 7. 선고 98두11779 판결, 2006. 4. 14.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).

### 5년의 참여제한 적법

⑤ 이 사건 환수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 B에 대하여 참여제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은 학술진흥법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가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, 학술진흥법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하는 학술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뿐 교육부 이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, 기업 등이 시행하는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 원고 B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.

첨부: 서울행정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8구합79971 판결

행정소송, 이의신청, 소청심사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